

#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지침

제정 2005. 9. 1.  
개정 2006. 3. 1.  
개정 2008. 12. 19.  
개정 2009. 3. 17.  
개정 2010. 4. 14.  
개정 2012. 2. 1.  
개정 2012. 2. 24.  
개정 2012. 6. 7.  
개정 2015. 3. 25.  
개정 2017. 1. 4.  
개정 2018. 2. 22.  
개정 2019. 2. 20.  
개정 2019. 10. 1.  
개정 2020. 3. 26.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실적물의 범위) ①연구실적물은 전공분야에 해당하고 형식과 내용이 연구물로서의 체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연구실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 신문 등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저서 및 번역서
2. <삭제>
3. <삭제>
4. 전문학술지
5. 예·체능계열, 건축설계 및 실내건축설계 분야의 경우 연구, 발표, 전시 및 입선 등

③석·박사 학위논문

④ <삭제>

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편찬한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국·검정도서의 초판 및 채택률 상위 50%이상 도서에 한함)는 인정한다.

제2조의1(연구실적물로서 산학협력 실적의 인정 범위)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기술이전, 국내·외 특허 등록, 산학공동연구, 교원창업 등 산학협력 실적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 전임교원은 「부산대학교 연구소 전임교원 등의 교수시간과 연구실적물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별도로 인정한다.

제3조(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 ①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단독연구 또는 편찬 : 100%
2. 2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70%
3. 3인 공동연구 또는 편찬 : 50%
4.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 30%
5. 석사학위 논문 : 100%
6. 박사학위 논문 : 200%

②우수한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인정율의 1.25 내지 2.00의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학문분야별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은 [별첨 1]에 의한다.

③제1저자(책임저자)나 교신저자는 저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70%를 인정한다.

④예·체능계열, 건축설계 및 실내건축설계 분야의 실기(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별첨 2]에 의한다. 이 경우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신규 임용의 경우에는 1년에 100%만 인정한다.

⑤산학협력 실적의 인정기준은 [별첨 3]과 같다.

제4조(연구실적물 인정기준) ①신규임용의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은 교수초빙 모집분야의 학과(부) 세부 심사표에 의한다.

② <삭제>

③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은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인정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동일 직급재계약, 승진재계약,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재임용에 있어서는 각 해당 경력소요 기간 내 발표한 논문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산학협력 실적을 동일직급재계약, 승진재계약,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재임용의 연구실적물로 인정함에 있어, 「부산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심사규정」 제4조의3제1항의 연구실적물 기준의 1/2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연구실적물 심사) ①연구실적물 심사는 신규임용, 동일직급재계약, 승진재계약,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재임용시에 실시한다.

②신규임용의 경우 연구실적물 심사는 교수공채 학과(부)세부심사기준에 의한다.

③동일직급재계약, 승진재계약,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및 재임용시 대상자의 연구실적물 심사는 해당 전공분야 3인 이상이 심사한다.

④제2항의 신규임용 심사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교외 전문가로 한다. 단, 최근 5년 이내 SCIE, SSCI, A&HCI 및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급 연구실적물 300%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 (연구실적물 심사 면제) ① 석·박사 학위논문과 SCIE, SSCI, A&HCI, SCOPUS 및 한국 연구재단등재(후보)지급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심사를 생략한다.

② <삭제>

####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6. 3.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재직 중인 교원의 제4조 제2항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은 전임교원임용심사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2. 1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2.)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2항 및 [별첨1]은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 단 2017학년도 신규 임용된 교원 중 별도 성과 약정을 체결한 교원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기존 재직교원 중 조기승진을 위한 연구실적물 산정시에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19. 2. 2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1] 학문분야별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 1. 2018학년도 상반기 이전 신규임용 된 경우

| 인정비율 |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   | 자연, 공학 분야   |
|------|--|---|
| 150% | - 우수 저서 및 번역서<br>(인문, 사회계열에 한함)                          |   |
| 125% |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b>SCIE, SSCI, A&amp;HCI</b><br>등재지 게재 논문 | - <b>SCIE, SSCI, A&amp;HCI</b> 등재지 게재 논문                  |
| 100%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br>- 학술적 저서 및 번역서                   | - <del>SCI와 SCI급 등재지 게재 논문</del><br>-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

### 2. 2018학년도 상반기 이후 신규임용 된 경우

| 인정비율 | 인문, 사회, 예체능분야  | 자연, 공학분야  |
|------|--|---|
| 200% | - Nature, Science, Cell 게재 논문<br>- 분야별 상위 1% 이내 또는 분야별 저널랭<br>킹 1위 <b>SCIE, SSCI, A&amp;HCI</b> 게재 논문<br>- 우수 저서 및 번역서(인문, 사회계열에 한함) | - Nature, Science, Cell 게재 논문<br>- 분야별 상위 1% 이내 또는 분야별 저널<br>랭킹 1위 <b>SCIE, SSCI, A&amp;HCI</b> 게재 논문 |
| 125% |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게재 논문<br>- SCOPUS 및 <b>SCIE, SSCI, A&amp;HCI</b> 게재 논문   | - <b>SCIE, SSCI, A&amp;HCI</b> 게재 논문  |
| 100% |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br>- 학술적 저서 및 번역서   | - SCOPUS 게재 논문<br>-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

※ ~~SCI급 등재지 : SCI, SCIE, SSCI, A&HCI 등재 학술지를 말함~~

※ 연구실적물 발행연도 또는 최근연도의 JCR 기준을 적용하며 분야(카테고리)가 2개 이상일 경우 학과(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분야의 랭킹으로 함

#### 가. 학술적 저서 및 번역서 기준

다음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저서 및 번역서에 한함.

-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전문 연구서 및 번역서로서 학술적인 체계와 형식을 갖추고 있을 것
- 200쪽 이상(시리즈 기획물의 도서는 제외)의 규모와 ISBN 코드를 갖춘 초판일 것
- 연구서의 경우, 전체 분량의 30% 이상이 기준에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것

#### 나. 우수 저서 및 번역서 기준

위에서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한 저서 및 번역서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전국적 규모의 공공기관 및 학술단체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을 수상한 저·역서
- 학술원, 문화관광부 등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저·역서
- 한국연구재단 등 권위 있는 학술지원재단에 의해 지원·출판된 저·역서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급 학술지의 서평 대상에 선정된 저·역서

- 기타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를 첨부한 저·역서

☞ 저서 및 역서에 대한 최종 인정은 위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 공저 및 공역의 인정비율은 총 저자 및 역자의 수로 나누어 정하되, 편저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별첨 2] 예술계열, 건축설계 및 실내건축설계 분야 실기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 I. 공통사항

1. 창작 발표의 경우, 팸플릿 등의 결과물과 함께 다음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 작품의 목적과 의도, 개념,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분야의 기여도를 설명한다.  
 나. 작품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시간/공간을 달리하여 발표되었을 경우, 그 차이의 예술적 의미를 밝힌다.
2. 음악, 조형, 공연예술, 디자인, 건축설계 및 실내건축설계 분야의 창작 발표 및 연구실적 평가에는 별도로 정한 다음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3. 신규 임용의 경우 연 100%만 인정한다.

### II. 음악 부문

1. 동일한 레파토리로 4년 이내에 행한 연주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년 후 재연주일 경우, 80% 평가
2. 신작 발표는 연주, 출판, 출판 중 1개 분야에 한정해 평가한다.
3. 승진 시 현 직급 임용기간 중 1회 이상의 독창회, 독주회 또는 개인작곡발표회를 포함해야 한다.
4. 세부평가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음악 부문 평가기준

| 종별       | 평가내용                       | 기본점수 | 비고                       |
|----------|----------------------------|------|--------------------------|
| 독창회, 독주회 |                            | 150% | 60분 내외                   |
| 실내악      | 전체프로그램                     | 70%  | 1/2프로그램 50%, 1/3프로그램 30% |
| 협연       | 전 악장                       | 100% | 일부 악장 50%                |
| 오페라      | 주연                         | 100% | 조연 50%                   |
| 연출       | 오페라 전체                     | 100% | 오페라 단막 50%               |
| 지휘       | (교향악단, 실내악단, 전문합창단 전체프로그램) | 100% | 1/2프로그램 70%, 1/3프로그램 50% |
| 반주       | 전체프로그램                     | 70%  | 1/2프로그램 50%, 1/3프로그램 30% |
| 작곡       | 개인작곡발표회                    | 150% | 60분 내외                   |
|          | 오페라, 관현악곡, 심포니, 칸타타, 오라토리오 | 100% |                          |
|          | 실내악, 합창곡, 기악독주곡            | 70%  |                          |
|          | 가곡, 편곡                     | 30%  |                          |

### Ⅲ. 조형예술 부문

1. 동일 작품의 전시는 1회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승진 시 현 직급 임용기간 중 개인전 1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형예술 부문 평가기준

| 종별                                 | 평가내용  | 점수   |
|------------------------------------|---|------|
| 개인전(국내, 국제)                        | 1. 작품 10점 이상 출품한 전문화랑에서의 개인전                                  | 150% |
|                                    | 2. 작품 10점 이상 출품한 아트페어와 부스 개인전                                 | 100% |
| 2인전(국내, 국제)                        | 작품 5점 이상 출품한 전문화랑에서의 2인전                                      | 50%  |
| 기획초대전(국내, 국제)                      | 1. 비엔날레(예, 베니스, 광주 등) 규모의 기획초대전                               | 70%  |
|                                    | 2. 국립, 도립, 광역시립 미술관 규모의<br>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기획초대전                 | 50%  |
|                                    | 3. 구, 군, 시단위 문화원 규모의<br>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기획초대전                    | 30%  |
|                                    | 4. 전문화랑 규모의 기획초대전   | 30%  |
| 단체전(국내, 국제)                        | 1. 공인된 단체전(문예진흥원, 미술협회 등에 등록된 단체<br>또는 전문가 단체에 준함)            | 30%  |
|                                    | 2. 일반 단체전   | 20%  |
| 공모전(국제, 전국규모)                      | 1. 대상   | 70%  |
|                                    | 2. 특선 이상  | 50%  |
|                                    | 3. 입선 이상  | 20%  |
| 프로젝트(행정단위)                         |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하며,<br>신규임용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
|                                    | 1. 국제적 또는 국가 규모의 프로젝트   | 100% |
|                                    | 2. 도, 광역시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70%  |
| 3. 시, 군, 구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50%   |      |
| 프로젝트(기업, 단체)                       |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하며,<br>신규임용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
|                                    | 1. 대기업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70%  |
| 2. 일반 기업, 사회단체 및 각종 기관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30%   |      |

#### IV. 공연예술 부문

1. One stage 안무는 전체 연주 점수를 기준으로 분할한다.
2. 순회공연 안무는 첫 1회 공연만 평가한다.
3. 승진 시 현 직급 임용기간 중 1회 이상의 개인발표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공연예술 부문 평가기준

<무용>

| 종        | 별                           | 평가내용                      | 부산문화회관<br>대극장 규모<br>기본 점수 | 부산문화회관<br>소극장 규모<br>기본 점수 | 세부내용  |
|----------|-----------------------------|---------------------------|---------------------------|---------------------------|---|
| 출연       | 독무                          | 전체프로그<br>램                | 80%                       | 70%                       | 1/2프로그램 대극장 60%, 소극장 50%<br>1/3프로그램 대극장 40%, 소극장 30%  |
|          | 2인 이상 군무                    |                           | 50%                       | 40%                       | 1/2프로그램 대극장 40%, 소극장 30%<br>1/3프로그램 대극장 30%, 소극장 20%  |
|          | 개인발표회                       | 1회 공연                     | 150%                      | 120%                      | 1/2프로그램 대극장 100%, 소극장 80%<br>1/3프로그램 대극장 80%, 소극장 60% |
| 안무       | 공동안무                        | 개인발표회 점수를 안무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                           |   |
|          | 재구성 및 재안무<br>(클라식, 발레, 전통춤) | 전체프로그<br>램                | 80%                       | 70%                       | 1/2프로그램 대극장 60%, 소극장 50%                              |
|          | 각종공연안무<br>(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 전체프로그<br>램                | 50%                       | 40%                       | 1/2프로그램 대극장 40%, 소극장 30%                              |
| 연출<br>감독 | 국내·외 행사 및<br>공연 총진행         | 국내규모<br>총진행               | 80%                       | 60%                       | 개·폐회식의 작품안무는 그룹공연<br>안무기준에 준한다.                       |
|          |                             | 국제규모<br>총진행               | 100%                      | 80%                       |   |

## V. 디자인 부문

1. 동일 작품의 전시는 1회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승진 시 현 직급 임용기간 중 1회 이상의 개인전([표 4]에 의한 개인전에 한함.) 또는 한국 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논문이 주저자로 1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디자인 부문 평가기준

| 종별                                 | 평가내용  | 점수   |
|------------------------------------|---|------|
| 개인전(국내, 국제)                        | 1. 작품 10점 이상 출품한 전문화랑에서의 개인전                                  | 150% |
|                                    | 2. 작품 10점 이상 출품한 아트페어와 부스 개인전                                 | 100% |
| 2인전(국내, 국제)                        | 작품 5점 이상 출품한 전문화랑에서의 2인전                                      | 50%  |
| 기획초대전(국내, 국제)                      | 1. 비엔날레(예, 베니스, 광주 등) 규모의 기획초대전,<br>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기획초대전         | 70%  |
|                                    | 2. 국제 및 전국 규모의<br>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기획초대전                          | 50%  |
|                                    | 3. 지역 규모의<br>공인된 단체 및 기관의 기획초대전                               | 30%  |
| 단체전(국내, 국제)                        | 1. 공인된 단체전(문예진흥원, 미술협회 등에 등록된 단체<br>또는 전문가 단체에 준함)            | 30%  |
|                                    | 2. 일반 단체전   | 20%  |
| 공모전(국제, 전국규모)                      | 1. 대상 및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디자인대전 특선 이상                                | 70%  |
|                                    | 2. 특선 및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디자인대전 입선 이상                                | 50%  |
|                                    | 3. 입선 이상  | 20%  |
| 프로젝트(행정단위)                         |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하며,<br>신규임용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
|                                    | 1. 국제적 또는 국가 규모의 프로젝트   | 100% |
|                                    | 2. 도, 광역시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70%  |
| 3. 시, 군, 구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50%   |      |
| 프로젝트(기업, 단체)                       |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하며,<br>신규임용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
|                                    | 1. 대기업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70%  |
| 2. 일반 기업, 사회단체 및 각종 기관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30%   |      |
| 논문                                 |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에 따름                                       |      |

## VI. 건축설계 부문

1. 동일 작품의 전시는 1회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국내외 권위 전문지 게재는 도면 등 구체적 내용이 게재된 작품만을 업적으로 인정한다.
3. 공모전 당선 및 입상은 공인기관의 확인서나 국내외 전문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증명한다.
4. 전문지 게재의 저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은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지침 제3조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을 따른다.
5. 공모전 설계자 수에 따른 인정 환산율은 대표설계자(또는 응모대표자)와 공동설계자(또는 공동응모자)의 구별은 없고 단지 총 설계자수에 따라 1인 단독 100%,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이상 공동 30%로 한다.
6. 승진 시 현 직급 임용기간 중 작품전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논문이 주저자로 2회 혹은 2편(교수 승진 시 3회 혹은 3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7.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건축설계 부문 평가기준

| 종별      | 평가내용                       | 점수   |
|---------|----------------------------|------|
| 작품전     | 1. 국제 개인 및 초대작가전           | 150% |
|         | 2. 국내 개인전                  | 100% |
|         | 3.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단체전 및 초대작가전 | 80%  |
|         | 4. 공인된 국내 시도규모 단체전 및 초대작가전 | 40%  |
| 전문지 게재* | 1. 국제 권위 해외전문지 게재          | 150% |
|         | 2. 국내 권위 전문지 게재            | 100% |
| 공모전     | 1. 현상설계 공모전 당선             | 150% |
|         | 2. 현상설계 공모전 입상             | 120% |
| 논문      |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에 따름    |      |

\* 국제 및 국내 권위 전문지는 다음과 같은 전문지 수준 이상의 전문지로 한다.

- 국제 권위 해외전문지: UIA 리스트에 있는 건축저널급의 잡지(국내 출판 월간 '공간' 포함)
- 국내 권위 전문지: C3, 플러스, 건축문화, 건축, 건축세계

## VII. 실내건축설계 부문

1. 동일 작품의 전시는 1회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국내외 권위 전문지 게재는 도면 등 구체적 내용이 게재된 작품만을 업적으로 인정한다.
3. 전문지 게재의 저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은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지침 제3조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을 따른다.
4. 승진 시 현 직급 임용기간 중 작품전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논문이 주저자로 2회 혹은 2편(교수 승진 시 3회 혹은 3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실내건축설계 부문 평가기준

| 종별           | 평가내용   | 점수   |
|--------------|--|------|
| 작품전          | 1. 공인된 국내 전국규모 단체전 및 초대작가전                                 | 80%  |
|              | 2. 공인된 국내 시도규모 단체전 및 초대작가전                                 | 40%  |
| 전문지 게재*      | 1. 국제 권위 해외전문지 게재  | 150% |
|              | 2. 국내 권위 전문지 게재  | 100% |
| 프로젝트(행정단위)   |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신규임용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
|              | 1. 국제적 또는 국가 규모의 프로젝트                                      | 100% |
|              | 2. 도, 광역시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70%  |
|              | 3. 시, 군, 구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50%  |
| 프로젝트(기업, 단체) | (우리 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신규임용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
|              | 1. 국외대기업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100% |
|              | 2. 국내대기업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70%  |
|              | 3. 일반 기업, 사회단체 및 각종 기관 규모의 의뢰 프로젝트                         | 30%  |
| 논문           |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에 따름                                    |      |

- \* 국제 및 국내 권위 전문지는 다음과 같은 전문지 수준 이상의 전문지로 한다.
- 국제 권위 해외전문지: UIA 리스트에 있는 건축 저널급의 잡지(국내 출판 월간 '공간' 포함), Interior Design
  - 국내 권위 전문지: C3, 플러스, 건축문화, 건축, 건축세계 (건축부문 전문잡지) 컨셉, 마루, 인테리어스, 인테리어월드(실내건축부문 전문잡지)

[별첨 3] 산학협력 실적 인정 기준

| 부문 | 실적항목   | 실적기준                                | 반영비율                                |
|----|--|-------------------------------------|-------------------------------------|
| 연구 | 산업체 기술이전   | 2천만원당                               | 100 %                               |
|    | 국외 특허 등록   | 1건                                  | 100 %                               |
|    | 국내 특허 등록   | 1건                                  | 50 %                                |
|    | 산학협력 공동연구(산업체용역)   | 연구비<br>3천만원당                        | 100 %                               |
|    | 산학협력 공동연구(정부과제)  | 연구비<br>1억원당                         | 100 %                               |
|    | 교원창업   | 1건                                  | 100 %                               |
| 교육 | 캡스톤디자인 (최대 30%)<br>1) 교과목 개설<br>2) 캡스톤디자인 지도<br>3)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지도             | 1) 학기당<br>2) 건당<br>3) 건당            | 1) 15%<br>2) 10%<br>3) 5%           |
|    | 현장실습 (최대 30%)<br>1) 현장실습지도<br>2) 현장실습기관 발굴                                   | 1) 건당<br>2) 기관당                     | 1) 5%<br>2) 10%                     |
|    | 학생창업교육 (최대 30%)<br>1) 창업교과목 개설<br>2) 창업동아리 지도<br>3) 대학원생 창업<br>4) 창업 경진대회 지도 | 1) 학기당<br>2) 동아리당<br>3) 건당<br>4) 건당 | 1) 30%<br>2) 10%<br>3) 30%<br>4) 5% |
|    | 산업체 강의(최대 30%)   | 건당                                  | 2%                                  |
|    |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 (최대 30%)   | 건당                                  | 10%                                 |
| 봉사 | 기술교류회 등 기타산학협력활동(최대 30%)<br>1) 기술교류회<br>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고문 및 자문위원           | 1) 건당<br>2) 건당                      | 1)책임자 15%, 참여자 5%<br>2) 5%          |

※ [별첨3] 학문분야별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인정비율 100%를 기준으로, 교육 및 봉사 부문에 있어 각 항목별 기재된 최대 반영 비율(30%)을 초과하여 산정 할 수 없음

- ※ 기술이전은 산학협력단에서 체결된 것에 한한다.
- ※ 연구비는 본인의 실제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산학협력 실적의 인정율은 연구참여자가 다수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2/(n+1)로 하고, 공동연구원은 1/(n+1)로 한다.
- ※ 산업체 기술이전, 산학협력 공동연구(산업체 용역), 산학협력 공동연구(정부과제)의 실적 기준을 초과하여 수주하였을 경우, 그 이상 초과분은 기준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다만, 다수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 건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개설 인정시 캡스톤디자인 팀 지도 중복 인정 불가하며, 캡스톤디자인 경진 대회 지도는 교외경진대회 지도시, 예선통과 또는 본선 입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현장실습이란 학점 인정을 받는 현장실습에 한하여 인정(방학기간+정규학기)하며, 현장실습 기관 발굴에 대해서는 학과(부)장이 인정한 건에 한한다.
- ※ 기술지도, 경영자문, 산업체 강의는 기업, 지자체 등 기술지도, 경영자문, 산업체 강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은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기타지식재산권을 말한다.
- ※ 창업교과목 개설시 팀티칭 과목의 경우는 책임 시수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여 반영하며, 대학원생 창업 실적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 창업경진대회 지도시, 장관급 이상 수상의 경우 20%, 장관급 미만 수상의 경우 5%로 산정한다.
- ※ 기타 산학협력활동의 경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름)의 고문 및 자문위원에 한한다. (산업체 제외)